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4. 26 선고 2021가단1189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혜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박윤희, 정태근, 차승균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1. 2. 5. 체결된 46,052,08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052,0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46,052,0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알 수 있다.

- 1)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 피고의 배우자인 D은 2021.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0. 3. 26.부터 2021. 4. 27.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 소유 자금 12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D은 5,299,686,438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배상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초기1141호)을 받았다.
- 2) D의 증여 : D은 2021. 2. 5. 피고에게 승용차 구입대금 46,052,086원을 증여하였다.
- 3) D의 무자력 : 위 증여 당시 D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사건 횡령금 채무 포함)이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승용차 구입대금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D은 피고에게 승용차 구입대금을 증여할 경우 공동담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 1) 피고는 D의 횡령행위를 몰랐고 이에 가담한 적도 없으며, D이 저축하거나 주식 투자하여 얻은

수익, 친지들이 준 돈을 재원으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준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D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드는 위와 같은 막연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D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증여액 46,052,08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¹⁾,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원목

1)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